



구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885호 |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조 레

○ 미추홀구 조례 제19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미추홀구 조례 제198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4
○ 미추홀구 조례 제198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미추홀구 조례 제198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 미추홀구 조례 제1988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미추홀구 조례 제198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미추홀구 조례 제199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 미추홀구 조례 제199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규 칙

○ 미추홀구 규칙 제106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28
○ 미추홀구 규칙 제106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30

고 시

○ 미추홀구 고시 제2026-123호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3BL』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 인 고시	35
----------------------	--	----

공 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46호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송의동 현대아파트 소 규모재건축정비사업)	36
○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697호선 외 1개노선)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공고·열람	37

기 타

○ 인천석정 LH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제2026-01호	인천석정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전고시	40
---------------------------------------	--------------------------------	----

회 람

조 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공포)****1. 조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간사는 위원회(상임·특별)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거나 위원장 결위 시 직무를 대행하는 등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간사의 사전적 의미가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사람으로 직무의 책임과 권위가 반영되지 못하므로 그 역할과 지위에 적합하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직책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간사에서 부위원장 명칭 변경(안 제11조, 제11조의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19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는”을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제11조의2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간사는"을 "부위원장은"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공포)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도위원수 규정 정비
-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

3. 주요내용

- 청소년지도위원수 10인 이내→20인 이내로 변경(안 제15조)
-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2조, 안 제4장 제20조~27조)
- 운영세칙 제정 근거 신설(안 제5장 제28조)
- 상위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2조, 제16조)
-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198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 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 을 말한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교육자, 학부모 등 보호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과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육성 및 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 소속기관의 실무자와 주요 청소년관련단체 및 시설, 청소년상담실 실무자 또는 청소년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 조정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앞서 관련기관, 단체협의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씩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청소년대표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 및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지도위원

제12조(위촉 및 해촉) ① 지도위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활동에 열의 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3. 공·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 등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4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인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6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
화활동
3. 관내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등 우범지역의 순찰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6.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부조·지원활동

7.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등

-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서식과 같다.

제1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②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지도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 및 지도위원 활동방향 제시, 관련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동 협의회는 매월 1회 정례회를 개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 ④ 구 협의회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제20조(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
2. 타 시도 및 인천광역시 내 군·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3.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안·행사 진행 등

제21조(구성 및 위촉)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교육(지원)청·학교, 청소년단체·시설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되, 연령·성별·지역별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12월 말까지로 하며, 참여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⑥ 참여위원회 운영·활동 등 각종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22조(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에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 참여위원회 명의를 정치활동 등으로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사망 또는 결혼
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회의) ①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4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참여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 등)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구청장은 참여위원회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위탁)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제17조 관련)

(앞면)	(뒷면)
청소년지도위원증 사진 (가로 3cm× 세로 4cm) (성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지도위원증 동명 : 성명 : 생년월일 : 임 기 :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5.4cm× 세로8.6cm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공포)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국정과제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및 법제처 의견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명과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치법규 집행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임 근거 및 조항 명시(안 제1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198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본청”을 “법 제21조에 따라 본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합지원 사업”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공포)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따라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를 통해 법령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추진을 위함

3. 주요내용

-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기관의 도로명주소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2조)
-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을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11조제3항)
 - 기간 만료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회 연장할 수 있다
-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수탁자 선정 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비함(안 제11조제4항)
 - 에코센터 운영위원회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수탁자 선정
-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수탁자 선정에 대한 정비에 따른 운영위원회 기능을 정비함(안 제15조제2항제3호 삭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198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매소홀로 290번길”을 “매소홀로290번길”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연장”을 “1회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공포)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주차장법」이 일부개정(개정 2025. 12. 2., 시행 2026. 6. 3.)됨에 따라
자주식주차장에 비해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주차장법」제19조의5제2항제3호)이 삭제되어 이를 조례
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 조항 삭제(안 제18조의2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1988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공포)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 완화
 - (안 제3조제1항)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안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198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로, “3”을 “2”로,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전문감사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공포)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위탁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
(안 제5조의2제1항)
- 상위법령명 낫표 표기 및 인용조항 수정
(안 제5조제1항제13호, 안 제8조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199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 및 별표3의2”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 법8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산”을 “예산”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공포)

1. 조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상위기관의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반영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199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 (공포)****1. 규칙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안이유

-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정비하고자 함
-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함

3. 주요내용

-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함 (안 제3조제2항)
-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정비함 (안 제5조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 제106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청장이 되고”를 “부구청장이 되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 (공포)

1. 규칙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2026. 4. 6.)되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공개공지'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세부 절차와 관련 서식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절차 신설(안 제4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김 정 식

2026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 제106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제1호에 따른 소유자 명부에 있는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미추홀구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④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① 건물명		②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소			
대상시설 (공개공지)	⑥ 명칭			
	⑦ 소재지			
	⑧ 연면적(m ²)			
	⑨ 전체 소유자 (인원수 기재)	명		
⑩ 금연구역 지정 동의 결과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찬성		반대	
⑪ 금연구역 해제 동의 결과 (찬성 또는 반대한 인원수 기재)	찬성		반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신청시 제출서류	-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 소유자 명부에 있는 소유자 2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해제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공개공지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을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여부를 조사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	① 건물명	
	② 소재지	
	③ 대상범위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소유자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호수	성명	찬성	반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합니다.

위 사항을 소유자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고 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6 - 123호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3BL』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학익 내 공동3BL을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제1항, 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사업명칭: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공동3)
2. 사업주체: 코리아신탁(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10층)]
3. 사업시행위치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 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동3BL
 - 나. 대지면적 : 91,275.60m²
 - 다. 규 모 : 지하2층 ~ 지상49층, 주9개동 및 부속15개동
공동주택(1,949세대), 부대 및 복리시설
4. 주요변경 내용
 - 사업주체 변경[(주)디씨알이 → 코리아신탁(주)]
5. 사업계획(변경)승인일: 2026. 8. 13.
6. 사업시행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2030. 3. 31.
7. 의제처리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공 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 - 1346호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우리 구 송의동 129-96번지 일원 “송의동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1.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내용

- 가. 명 칭: 송의동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나. 시 행 자: 송의동 현대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다.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4, 2층
- 라.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
- 마. 신청내용
 - 조합정관 변경, 조합원 교체, 조합임원 및 대의원 변경

2. 공람개요

- 가. 공람내용: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내역
- 나. 공람기간: 2026. 8. 18. ~ 2026. 9. 1. (14일간, 토·일·공휴일 포함)
- 다.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 032-880-448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3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697호선 외 1개노선)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중3-697호선 외 1개노선)사업의 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하여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8.

인 천 광 역 시 미 추 홀 구 청 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744-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697호선, 중로2-973호선)
- 명칭: 중로3-697호선 도로확장공사 및 중로2-973호선 가각부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노 선 명	폭 원(m)	연 장(m)	면 적(m ²)	기 점	종 점	비 고
중로2-973	15	60	992.6 (16.7)	중3-697	대2-7	가각부 일부 공사
중로3-697	14.3 (3)	197	2,989.6 (548.1)	대2-10	대2-7	

※ ()는 금회 공사구간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시 행 자	(주)아이타워컨벤션	(주)한스마켓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171, 1층(고잔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로9번길 54, 1층(옥련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7. 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번호	행정 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성명	
1	미추홀구 학익동	744-4	대지	3,265.3	164.6	신한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2		744-15	대지	3,132.1	156.4	주식회사 한스마켓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로9번길 54(옥련동)			
3		744-16	대지	1,689.7	243.8	주식회사 한스마켓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로9번길 54(옥련동)			
합 계				8,087.1	564.8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973	15	국지 도로	60	중3-697	학익동 744-4	일반 도로	-	미추홀구고시 제2024-23 (24.2.13.)	가각부 일부
기정	중로	3	697	14.3	국지 도로	197	대2-10	대2-7	일반 도로	-	인고 제2017-275 (17.11.20.)	

※ 중로2-973호선은 금회 공사하는 가각부 일부(16.7㎡)를 무상귀속하는 사항임

8. 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6. 8. 18. ~ 9. 2.)

나. 공람장소

- 월~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본관 1층 도시계획과(☎ 032-880-4487)
- 주말, 공휴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본관 1층 당직실(☎ 032-880-4222)

다. 관계도서: 공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기 타

【인천석정 내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제2026-01호】

인천석정 내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전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3-56호(2023.03.27)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된 인천석정 내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인천석정 내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영준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 정비사업의 명칭 : 인천석정 내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지적확정측량 결과에 의함)

- 정비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85-16외 62필지
(확정 지번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463번지)
- 정비사업의 면적 : 7,401.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 인천석정 내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25(송의동)

4. 준공인가일 : 2023. 03. 22

준공인가 고시일 : 2023. 03. 27(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3-56호)

준공인가 정정고시일 : 2023. 04. 0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3-60호)

5. 이전고시 내역

가) 지번별 조서(지적확정측량 결과에 의함)

중전 지적의 표시(폐쇄)					확정 지적의 표시(시행)		
위 치 (미추홀구)					위 치 (미추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재지	지목	면적(m ²)
1	송의동	85-5	대	153.9	1.송의동 463	대	7,401.40
2	송의동	85-6	대	120.6	- 이하여백 -		
3	송의동	85-7	대	45.4			
4	송의동	85-8	대	135.1			
5	송의동	85-9	대	88.1			
6	송의동	85-10	대	168			
7	송의동	85-12	대	106.8			
8	송의동	85-13	대	155.5			
9	송의동	85-14	대	326.6			
10	송의동	85-15	대	116.5			
11	송의동	85-16	대	545.7			
12	송의동	85-17	대	108.6			
13	송의동	85-18	대	114.4			
14	송의동	85-20	대	78.6			
15	송의동	85-21	대	98.5			
16	송의동	85-22	대	97.9			
17	송의동	85-23	대	81.2			
18	송의동	85-24	대	105.8			
19	송의동	85-25	대	54.2			
20	송의동	85-27	대	132.8			
21	송의동	85-29	대	157.1			
22	송의동	85-30	대	216.7			
23	송의동	85-31	대	298			
24	송의동	85-32	대	99.3			
25	송의동	85-33	대	225.6			
26	송의동	85-34	대	293.4			
27	송의동	85-35	대	684.6			
28	송의동	85-36	대	92.5			
29	송의동	85-37	대	170			
30	송의동	85-38	대	126.7			

위 치 (미추홀구)					위 치(미추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재지	지목	면적(m ²)
31	송의동	85-39	대	38.6			
32	송의동	85-40	대	19.6			
33	송의동	85-41	대	20.9			
34	송의동	85-43	대	46.5			
35	송의동	85-44	대	79.9			
36	송의동	85-45	대	55.8			
37	송의동	85-46	대	90.6			
38	송의동	85-47	대	108.5			
39	송의동	85-48	대	35.5			
40	송의동	85-49	대	37.9			
41	송의동	85-50	도로	1.8			
42	송의동	85-51	대	85.8			
43	송의동	85-52	대	100.8			
44	송의동	85-53	도로	1.5			
45	송의동	85-54	대	39.4			
46	송의동	85-55	대	87.7			
47	송의동	85-56	대	74.2			
48	송의동	85-57	대	158.5			
49	송의동	85-58	대	9			
50	송의동	85-59	대	103.1			
51	송의동	85-74	대	141.7			
52	송의동	85-75	도로	60.9			
53	송의동	85-76	대	43.5			
54	송의동	85-77	대	88.5			
55	송의동	85-78	대	55			
56	송의동	85-79	대	48.5			
57	송의동	85-80	대	69.6			
58	송의동	85-81	대	41.3			
59	송의동	85-82	대	28.5			
60	송의동	85-83	대	47.1			
61	송의동	85-84	대	53.6			
62	송의동	85-85	도로	32.3			
63	송의동	85-86	도로	296.5			

나) 토지의 용도별 내역

위 치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미추홀구 송의동 463	대	7,401.4	이전고시 조서 참조	공동주택 및 부대복 리시설등

다) 건축시설의 내역(준공인가 내역)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대지면적	7,401.4㎡	건축면적	1,825.9263㎡
연 면 적	25,584.1451㎡	층 수	지하3층 ~ 지상20층
건 폐 율	24.67%	세 대 수	293세대(4개동)
용 적 륜	249.7123%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시설의 분양 및 대지 면적(아파트)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대지면적
16A	6	16.5961	26.2266	36.4960	10.6237
16B	17	16.1683	25.6810	35.7285	10.4027
16C	17	16.3481	25.8191	35.9299	10.4587
26A	68	26.7364	40.9269	57.0366	16.5784
36A	17	36.7040	50.1599	70.2993	20.3185
46A	19	46.8323	63.1428	88.5580	25.5775
51A	33	51.9595	70.3584	98.6553	28.5004
59A	58	59.9394	81.1705	113.8153	32.8801
59B	20	59.8888	81.5526	114.3176	33.0349
66A	38	66.8987	90.4904	126.8913	36.6554

마) 건축시설의 분양 및 대지 면적(근린생활시설)

호수	층	세대수	전용면적	계약면적	대지면적
101호	지상1	1	82.9910	99.4119	28.7595
102호		1	25.6560	30.7324	8.8908
103호		1	37.4480	44.8576	12.9772
104호		1	86.6160	103.7542	30.0158
201호	지상2	1	38.6400	46.2855	13.3902
202호		1	45.3600	54.3351	15.7190
203호		1	38.6400	46.2855	13.3902

바) 이전 대상 대지 또는 건축시설별 분양 권리자 수

공동주택(아파트)						
구분	평형	세대수	조합원	일반분양	임대 (행복주택)	비 고
아 파 트	16A	6	-	-	6	
	16B	17	-	-	17	
	16C	17	-	-	17	
	26A	68	-	-	68	
	36A	17	-	17	-	
	46A	19	4	15	-	
	51A	33	5	28	-	
	59A	58	9	49	-	
	59B	20	2	18	-	
	66A	38	11	27	-	
근린생 활시설	101호	1	-	1	-	
	102호	1	-	1	-	
	103호	1	1	-	-	
	104호	1	1	-	-	
	201호	1	-	1	-	
	202호	1	-	1	-	
	203호	1	-	1	-	

사) 이전 설정되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건수

권리신고(권리종류별)				
계	근저당	가처분	가압류	압류
- 없 음 -				

6. 관계인서류 열람장소: 인천석정 내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사무소
 (전화:032-881-0802 ,팩스:032-766-080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125(송의동)